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2. 1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영교

###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735호
- 나. 제출자: 남연희 의원
- 다. 제출일자: 2021. 12. 29.
- 라. 회부일자: 2022. 1. 27.

### 2. 제안이유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안 제4조)
- 라. 야간약국의 관리(안 제5조)
- 마. 야간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약사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나. 협조부서: 보건의료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 2022. 1. 21. ~ 2022. 1. 26.

## 5.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검토

- 본 제정안은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나. 조례안 주요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야간약국 지정을 통해 국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국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 등 지도·감독과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정부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에 한하여 편의점 판매를 시행<sup>1)</sup>하고 있으며
- 조사결과 국민들이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와 달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 공공 야간약국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2016. 리서치&리서치)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8%가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국회에서는 2022년 예산 심의 시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으로 총 17억 원을 편성하여 60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음
- 현재 서울시와 5개 자치구<sup>2)</sup>를 포함하여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1)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최초 20일 판매실적 보도참고자료(2012.12.4.)

2) 조례 제정 자치구(5):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영등포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2022년 1월 기준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에 34개소(성동구 1개소)<sup>3)</sup>의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억 원을 증액하여 1,535백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약국 영업종료 이후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 및 복약상담으로 의약품 오남용방지 및 부작용 감소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정부 및 서울시에서 예산 증액확보 등 공공 야간약국 운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많은 약국이 참여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 <붙임 1> 지정현황 참고

<붙임 1>

2022년 공공야간약국 지정 현황

◇참여: 24개구, 34개약국

(2022. 1. 1.기준)

구분		약국 일반 현황	
지정번호	자치구명	약국명	소재지
2022-1	종로구	일등약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 3148,3149호(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2022-2	중구	대풍약국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43 (신당동)
2022-3	용산구	수복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2 (도원동)
2022-4	성동구	새인선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11길 41-1
2022-5	광진구	더클래식약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90, 1층104-2호
2022-6	광진구	온누리강변프라자약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63, 현대프라임아파트107,108,109호
2022-7	동대문구	보림약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15 (장안동)
2022-8	중랑구	건명약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21
2022-9	성북구	계산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길 43(동선동1가)
2022-10	성북구	온누리민우약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2길 49(석관동)
2022-11	강북구	7번약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39(수유동)
2022-12	강북구	꿈이있는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62(수유동)
2022-13	도봉구	은혜약국	서울특별시 도봉로118길 11 (창동)
2022-14	노원구	진약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2, 01호,102호(상계동)
2022-15	노원구	새고운약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03, 1층 (공릉동)
2022-16	은평구	청룡중앙약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33, 103호
2022-17	서대문구	대유약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59
2022-18	서대문구	정약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09, 1층 111-2호
2022-19	서대문구	은하약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3길 1
2022-20	마포구	비온뒤숲속약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11, 104호, 105호(망원동, 풍성빌딩)
2022-21	마포구	셀약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2,1층118호(서교동)
2022-22	양천구	메디팜신정교약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36
2022-23	구로구	남구로약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33(가리봉동)
2022-24	금천구	별장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40
2022-25	영등포구	세종로약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97, 1층
2022-26	동작구	씨에이(CA)정문약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8
2022-27	관악구	뿌리약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14, 1층
2022-28	서초구	장수알파약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8, 1층
2022-29	서초구	기린약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1층
2022-30	강남구	제일그랜드약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78
2022-31	강남구	노바약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51, 1층
2022-32	송파구	시온약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9
2022-33	강동구	행복나무약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54 (천호동)
2022-34	강동구	우리들약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81 (암사동)

## < 관계법규 >

<b>붙임 1</b>	<b>「약사법」</b>
-------------	--------------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b>붙임 2</b>	<b>「보건의료기본법」</b>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